

#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제703호 2024. 3. 12.(화)

선 람	기관(부서)의 장

##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772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773호	고창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6
○ 고창군 조례	제2774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 고창군 조례	제2775호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4
○ 고창군 조례	제2776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고창군 조례	제2777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고창군 조례	제2778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48
○ 고창군 조례	제2779호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50
○ 고창군 조례	제2780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고창군 조례	제2781호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60
○ 고창군 조례	제2782호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68
○ 고창군 조례	제2783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고창군 조례	제2784호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79
○ 고창군 조례	제2785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고창군 조례	제2786호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89
○ 고창군 조례	제2787호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98
○ 고창군 조례	제2788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23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 고창군 규칙 제1238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15
- 고창군 규칙 제1239호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123

##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4-30호 아산면 죽산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고시 129
- 고창군 고시 제2024-31호 흥덕면 후포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고시 132

##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4-471호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135
- 고창군 공고 제2024-472호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고창군 주민제안 사업 집중접수 공고 142

## 【회 보】

- 2024 종합민원실 신축신고-27 (2024.2.29.) (상하면 김평희)도로지정 146
- 2023 종합민원실 신축신고-178 (2024.3.5.) (고창읍 김현정)도로지정 148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2 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관계기관·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창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고창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3 호

고창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행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⑤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하거나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사 부서 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 ②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갑질 신고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군수는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분리조치 등
2.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의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 등이 갑질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 조사 및 사례분석,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4 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고창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 대출”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구입, 신축, 전세 등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4. 1주택(관내 구입 및 신축의 경우)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②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
3.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4.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용도가 아닌 경우
4.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건축물대장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5회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② 청년은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1,000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최대 4%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③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4.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 2. 주민등록 사항
- 3. 구비서류
-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b>				
신청인 (본인)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 신고일		주택소유 여부(√체크)	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
	최초 전입일		재신청여부 (√체크)	신규 ( ) 재신청 ( ), 회
주택 현황	소재지			소유자
	금액 (구입, 신축, 전세)	원		면적(m <sup>2</sup> )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 신청인 본인 명의		
위와 같이 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b>고창군수 귀하</b>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b>[공통]</b>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및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공통)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사업소득계산명세서(홈택스)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금리)' 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일
				○○읍면장 직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5 호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자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제공사업
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6 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를 삭제하고,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2. 고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b>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청구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귀하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li>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li> <li>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b>청구인 대표자 증명서</b>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창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b>주민투표청구서</b>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군의 책무) ①~③ (생략)</p> <p>&lt;신설&gt;</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li> <li>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li> <li>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li> </ol>	<p>제2조(군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 -----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 -----.</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lt;삭제&gt;</p>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을 15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제11조(서명보정기간) -----  
-----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2. 고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2. 고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결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⑥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신 설>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 (생 략)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9조(공표방법 등) -----  
-----  
-----  
-----  
-----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7 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기소된”을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불참한 때

② 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1. (생략)</p> <p>2. 형사사건으로 <u>기소된 때</u></p> <p>3. ~ 6.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u>&lt;신 설&gt;</u></p>	<p>제10조(이장의 교체)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u> -----</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불참한 때</u></p> <p>② <u>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알려야 한다.</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랍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8 호

고창군 랍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랍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65세 이상인 자
-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탐방열차) ① ~ ③ (생략)</p> <p>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4조(탐방열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 한 65세 이상인 자</u></p> <p>4.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79 호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복지향상,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별표2를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향상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0 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원대상”을 “시설개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3호) 중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분	예산액 (교부조건)	%	집행액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 자발생액:	
자부담							

## 2. 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역	지출번호	지급방법
총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부 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210mm × 297mm[백상지(80g/㎡)]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② (생 략) &lt;신 설&gt;</p>	<p>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의 제한) <u>지원대상</u>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7조(지원의 제한) <u>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p>1. <u>지원대상</u>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2. <u>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u></p> <p>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u>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u> &lt;단서 신설&gt;</p>	<p>제9조(기능) ----- -----.</p> <p>1. <u>시설개선 지원대상</u> ----- -----</p> <p>&lt;삭 제&gt;</p> <p>2. ----- -----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 ----- .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1 호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고창군 관내에 둔다.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고창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정원·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방법)** 기숙사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5조(위탁계약 체결)**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보험·계약체결)**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입 주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국 적)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근 무 지			
신청사항	입주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보 호 자 (고 용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주택)	(휴대폰)	
<p>「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날인)</p>				
<p>고창군수 귀하</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2 호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고창군 계획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으로 한다.

제66조제2호 중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조(「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

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하단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부 칙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u>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u>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p> <p>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u>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u>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p>	<p>부 칙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 <u>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 ----- ② ----- <u>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 -----</p> <p>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 <u>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 <u>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p>

2. 고창군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p>	<p>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p>

<p>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u>전라북도</u>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p> <p>제66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u>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li> <li>3.·4. (생략)</li> </ol>	<p>----- -----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66조(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u>-----</li> <li>3.·4. (현행과 같음)</li> </ol>
---	---

3.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u>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u>」 제5조제1항에 따른 <u>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u>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u>」 제5조제1항에 따른 <u>전북특별자치도</u> -----.</p> <p>④ (현행과 같음)</p>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

2. (생략)

② (생략)

-----  
-----.

제3조(보조금 지원) ① -----  
-----  
-----  
-----  
-----.

1. 전북특별자치도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3 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전라북도”를 “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를 각각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u>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p> <p>3. (생략)</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 “<u>전북자치도 조례</u>”라 한다)-----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p>	<p>제3조의2(정당현수막) &lt;삭제&gt;</p>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계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 이어야 한다. 단, 고창읍은 5배 이내로 한다.

3.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② (생략)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1. ----- 전북자치도 -----  
-----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나. (생략)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생략)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

가. 나. (현행과 같음),

2. ----- 전북자치도 -----  
-----  
-----  
-----  
-----.

3.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 전북자치도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4 호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 연1회
2. 대상포진 : 1회(생백신)
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가. 60~64세

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아.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

자.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50세 이상 군민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 고창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5 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전단 중 “가정용으로써 계량기”를 “계량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를 “수급권자 및 차상  
위계층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등록된”을 “주소를 둔”으로 하며, 같  
은 항 제6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  
다.

제56조제1호 후단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단계별	요금(톤/원)	비고
가정용	1-20	480	
	21-30	660	
	31이상	780	
일반용	1-20	840	
	21-100	1,160	
	101 이상	1,490	
대중탕용	1-300	1,000	
	301-500	1,240	
	501이상	1,350	
산업용	1이상	510	

[별지 제9호서식]

<b>상수도 누수 발생 신고서</b>					
수 용 가	주 소				
	성 명				
	수용가번호	4790 -			
신고내용	누 수 일 시				
	누 수 위 치				
	누수원인 (구체적으로작성)				
누수량		전월지침		금월지침	
<p>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붙임 : 누수현장 사진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 : 고창군                  읍(면)                  로                  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인)(전화번호 :    )</p> <p style="text-align: center;"><b>고 창 군 수 귀 하</b></p>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 조손가정에게는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고창군에 등록된 사람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한정한다.

5. (생략)

6.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다.

7.·8. (생략)

<신설>

9.·10. (생략)

② (생략)

제56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4.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  
-----  
----- . -----  
- 주소를 둔 -----  
-----

5. (현행과 같음)

6. -----  
-----  
----- 2명 -----  
----- .

7.·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상수도 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다.

10.·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정수처분) -----  
-----  
----- .

1. -----  
-----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체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  
 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 -  
 -----  
 ----- 수급권자 -----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6 호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창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군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병역에 관한 사항
4.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인사청문일 7일 전까지 청문 일시와 장소, 인사청문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장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창군의회(제7조제1항 관련)

선서문

선서,

(임명 예정 기관명)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   년   월   일

임명후보자   성명                   (서명)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7 호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와 군민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군민에게 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의회 공식 SNS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의장은 SNS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담긴 경우
4. 특정기관 ·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 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 홍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홍보물)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포상) 의장은 SNS를 통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조례 제 2788 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규칙 제 1237 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본청 실장·정책관·과장의 직급 (제4조 관련)

직 위	직 급	직 렬
기획예산실장	5	지방행정사무관
종합민원실장	4~5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활력경제정책관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행정지원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관광산업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화예술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사회복지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인재양성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위생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재무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농업정책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농촌활력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해양수산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축산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산림공원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안전총괄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설도시과장	5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 읍·면장의 직급 (제10조 관련)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고창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고수면 행정복지센터	고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아산면 행정복지센터	아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무장면 행정복지센터	무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공음면 행정복지센터	공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상하면 행정복지센터	상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해리면 행정복지센터	해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성송면 행정복지센터	성송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대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심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홍덕면 행정복지센터	홍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성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신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부안면 행정복지센터	부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복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별표 1]

##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인발특별계정지원	1. 과 업무 통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사무	
	인발특별계정지원	2. 실업대책 통합기획	
	인발특별계정지원	3. 노정업무 및 노동조합 건전육성	
	인발특별계정지원	4. 기업소개소 지도·감독	
	인발특별계정지원	5.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발특별계정지원	6. 청년취업2000사업	
	인발특별계정지원	7. 일자리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인발특별계정지원	8. 일자리공시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인발특별계정지원	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인발특별계정지원	10.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11.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 사업	
	인발특별계정지원	12. 청년정책 관련업무 전반	
	인발특별계정지원	13. 창업 관련업무 전반	
	인발특별계정지원	14. 관내 기업인 예로해소대책 수립	
	인발특별계정지원	15. 관내 기업체 산업인력 수급 대책 강구	
	인발특별계정지원	16.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인발특별계정지원	17.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인발특별계정지원	18. 투자유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인발특별계정지원	19. 국내외 기업 유치	
	인발특별계정지원	20.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	
	인발특별계정지원	21. 농공단지 시설 유지 관리	
	인발특별계정지원	22. 농공단지 입주 계약	
	인발특별계정지원	23.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인발특별계정지원	24.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완료신고 처리	
	인발특별계정지원	25. 공장설립 승인 및 완료신고 처리	
	인발특별계정지원	26. 이전기업 지원 및 관리	
	인발특별계정지원	27.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인발특별계정지원	28. 기업유치관련 집단민원 처리	
	인발특별계정지원	29.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인발특별계정지원	3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인발특별계정지원	31. 물가관리	
	인발특별계정지원	32.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33. 동신, 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34. 공산품, 원산지, 위조상품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35. 대부업, 복권업 관련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36. 담배소매업 관련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37. 과학기술 진흥육성에 관한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38. 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	
	인발특별계정지원	39.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인발특별계정지원	40. 상인회 및 대규모 점포에 관한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4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인발특별계정지원	42. BUY 전북 관련업무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신발탄광계정회관	43. 무등록 제조업체 파악 및 등록추진	
	신발탄광계정회관	44.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및 관리	
	신발탄광계정회관	45. 고압가스 인·허가 및 관리	
	신발탄광계정회관	46.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관리	
	신발탄광계정회관	47. 석유 판매업 등록·신고 및 관리	
	신발탄광계정회관	48. 계량기 검사 및 관리	
	신발탄광계정회관	49.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0. 지역에너지 관련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1. 열관리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2. 전기일반	
	신발탄광계정회관	53. 석연단 제조업 관리 및 지원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4. 농어촌 전기공급 관련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5.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6.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57. 사후환경 영향평가 실시(개발 중, 개발 후)	
	신발탄광계정회관	58. 산업단지 관련 국가예산 발굴 및 예산 확보	
	신발탄광계정회관	59. 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련 중앙부처, 도청 및 유관기관 협의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0. 산업단지 내 영농보상 협의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1. 산업단지 관련 주민 동향 및 민원해결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2. 산업단지 단계별 준공, 정산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3.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4. 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 개설 사업·공사 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5. 산업단지 분쟁 관련 행정심판, 소송 등 송사업무	
	신발탄광계정회관	66. 북분자특화농공단지 시설유지 관리	
	신발탄광계정회관	67. 북분자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공장등록	
	신발탄광계정회관	68. 노을대교 건설	
	신발탄광계정회관	69. 연계 교통망 구축	
	신발탄광계정회관	70. 전력에너지4차산업클러스터조성	
	신발탄광계정회관	71. 생태복합관광지조성(심원열전)	
	신발탄광계정회관	72. 노을 전망대 설치	
	신발탄광계정회관	73. 치유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신발탄광계정회관	74.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반영	
	신발탄광계정회관	75. 고향사랑 기부제	
	신발탄광계정회관	76. 지역내 증생산	
	신발탄광계정회관	77.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신원(이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계획수립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 장학재단 및 장학숙 관련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 초중고 학교의 지원·연계 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관련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 농생명과학과 등 인력양성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 평생교육활성화사업(당초 : 평생학습 지원)	사무명 변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추가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대학등록금 지원 및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고창포럼 운영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농촌유학사업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 공약강화 운영	삭제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 권알길학교	삭제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8. 여성정책 기폭 수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9. 가족센터 운영관리, 다문화가정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1. 원부모가정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2. 여성교육 및 여성회관 운영 관리(당초 : 여성정책교육 및 여성회관 운영 관리)	사무명 변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3. 새일센터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4.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5.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관련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6.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7.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8. 여성전화도시 조성 및 가족전화인증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9.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당초 : 아동지역연대)	사무명 변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0. 아이돌봄 지원사업 (당초 : 아이돌봄미 지원사업)	사무명 변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1.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2. 아동 보건,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3.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4.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5. 자원발굴 및 연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6. 아동수당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7.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8. 어린이날 행사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9.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0. 다자녀(셋째아)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3.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4.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6. 부강모두누리터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7. 아동학대 예방 업무 전반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8. 아동학대 피해아동, 행위자 등 조사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9.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일시보호) 등 보호조치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0. e아동돌봄지원사업 추진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1. 만3세 가정양육아동 안전 준수조사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2.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유관기관 합동 점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3. 아동학대 대응으로 인한 피해(배의 배의 피해 등) 예방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4.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5. 오보호아동 접수·조사·보호조치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6. 보호아동 개별 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점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7.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9. 보호아동 원가정복귀·시설전원 등 보호변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0. 보호아동 면접교섭 계획 수립 및 실시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1.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어린이집)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2.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4.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5.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6.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7.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8. 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0. 결혼중개업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1.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2. 청소년전용시설 위탁운영·청소년시설 신고처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3. 청소년 단체 지도·감독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교육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4. 청소년 관련 행사 개최·지원	수정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5.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6. 청소년 진로·생활 상담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8. 청소년 출입·거주구역 지정·관리 및 유해등록표 목록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9.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현장지도·관리(사법경찰권 행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0.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운영관리(당초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문화센터 운영관리)	수정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1.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리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2. 청소년 선도 육성사업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스카우트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3.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청소년증 운영관리	추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5.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 과 업무 통합 기획·조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 안전재난 정책 총괄 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 예산회계 및 일반사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 비상대비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 전시대비 업무	

국별	부서별	팀 사부	비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 고창군 방위협의회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 민방위 계획수립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 민방위대 조치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 민방위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 주민 신고망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 등화관계·음향관계·비상방송제도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3. 인력동원자원 관리·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4. 동원능력판단자료 조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5. 사회복부요원 복부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6. 고창군의용소방연합회 및 읍면의용소방대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7. 예비군육성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8. 군부대 관련 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지원 등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9. 재해응급복구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0. 재해응급복구에 따른 응급복구비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1.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및 사업 집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2.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및 소관지정시 협의검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3. 재해복구 유관기관 지역협력 체계구축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4.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5. 재난원인조사 분석 검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6. 등수해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7. 재난관리시스템에 확정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8. 재해응급(공공시설)지역 군부대등을 통한 복구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9. 재해위험지구 재해지도 제작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0.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각종지원제도 안내및 홍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1. 사유시설 재해대강 제작및배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2. 재해복구 유관기관 지역협력 체계구축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3. 칠수혼적도 제작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4. 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평시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6. 재해사전대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7. 재난대비 문자·자원·경비력다 및 재난안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8. 재난관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9. 등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0. 재난위험지정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1.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3. 유도선 안전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4. 수상레저 안전법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5. 시설물(교량, 건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6. 국가위기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7.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8. 안전관리 전문인력 체계 구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0.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재난대비 자원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1. 사회적 재난업무 일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2. 재난대비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체계구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3. 지역특계 사전 재해대처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4.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및 위협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5. 자연재난업무 일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6.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7. 고장기상대 업무협력 및 일일기상상황 파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8. 재난관리실태 공시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9. 사회재난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0. 각종재난에 대한 사후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1.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2.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전파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3. 재난 위기경후 분석.평가.경보발령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4.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5. 재난관사용CCTV.수향계.무향계 등 관측정보 정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6.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7.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8.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9. 안전신고업무 총괄계획 및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0. 안전신고 평가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1. 안전신고빅데이터 등 정보화 연계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2. 안전신고시스템 관리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3.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4.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5.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6. 안전신고의 날 행사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7.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8.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9.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1.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통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2. 특수재난 재난역량 분석.집단 및 교육.훈련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3. 특수재난 발생시 지대본 등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4. 사회재난 관련 지역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5. 지자체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7. 승강기 안전점검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8. 하천정비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9.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국별	부서별	번호	업무명	비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0.	소하천 점·사용허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1.	지방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2.	하도준설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3.	하천기성제 정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4.	자연형 하천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5.	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6.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7.	폐천부지 대부·매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8.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9.	하천내 어도시설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0.	비관리정 하천공사 관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1.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2.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3.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4.	하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5.	폐천부지 부상 양여, 증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6.	골재계위예정지 고시·허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7.	골재계위업 등록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8.	골재계위 허가 및 신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9.	원천방사능 방재 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0.	방사능 방호시설 악품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1.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2.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3.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보호 대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4.	원전기본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5.	그 밖에 원전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6.	안전관리 상시 점검·진단 등 재난현장 점검·대응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7.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8.	지하안전법 및 기반시설법 관련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9.	국유 재산(국토교통부, 하천) 사용, 대부계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0.	중대재해처벌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1.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3.	지역안전도 평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4.	재난관리평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5.	지역맞춤형 훈련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6.	재난 배상책임보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7.	군(도)민 안전보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8.	재난기본소득지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9.	산업안전관리	신설(이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규칙 제 1238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1】

고령군 「지역순회」 운영표

고령군 4차분회 402440001

구분	구	읍	면	연										연			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역순회	구	읍	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3월 12일

고창군 규칙 제 1239 호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

항

-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의 제안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2.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  
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 5. 다음 각 목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하는 사람
  -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다른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  
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의 청년 취업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직영이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고창군 고시 제2024-30호

## 아산면 죽산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고시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면 송림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7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06일

###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아산면 죽산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사 업 비 : 500백만원(군비 500[지방이양])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면 적 : 7,475ha
  - 가구·인구 : 42호/67명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

- 지역경관개선 : 연방죽 둘레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부대 경비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 시행 기간 : 2021. 1. ~ 2023. 12.

7. 관계도서 열람 장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708)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0)

##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기승인	준 공	
합 계	500,000 <75,000>	500,000 <75,000>	500,000 <75,000>	
국 비	-	-	-	
지방비	500,000 <75,000>	500,000 <75,000>	500,000 <75,000>	
이자분	-	-	-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기승인	준 공	
합 계	500,000	500,000	500,000	-
○ 공사비	350,000	359,042	359,042	-
□ 마을회관 철거·신축	300,000	343,386	343,386	-
□ 연방죽 둘레길 조성	50,000	15,656	15,656	-
○ 관리비 등	75,000	65,958	65,958	-
- 기본조사비	20,000	9,853	9,853	-
- 세부설계비	13,000	15,500	15,500	-
- 공사감리비	30,000	29,328	29,328	-
- 사업관리비	6,500	6,001	6,001	-
- 잡지출 및 기타	5,500	5,276	5,276	-
- 용지배수비	-	-	-	
○ 역량강화사업	75,000	75,000	75,000	공 동 체 지원센터

고창군 고시 제2024-31호

## 홍덕면 후포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고시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면 송림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농촌활력과(063-560-27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06일

###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홍덕면 후포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사 업 비 : 500백만원(군비 500[지방이양])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면 적 : 236ha
  - 가구·인구 : 99호/157명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부대 경비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 시행 기간 : 2021. 1. ~ 2023. 12.

7. 관계도서 열람 장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708)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30)

##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기승인	준 공	
합 계	500,000 <75,000>	500,000 <75,000>	500,000 <75,000>	<역량강화>
국 비	-	-	-	
지방비	500,000 <75,000>	500,000 <75,000>	500,000 <75,000>	<역량강화>
이자분	-	-	-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기승인	준 공	
합 계	500,000	500,000	500,000	-
○ 공사비	356,000	350,325	350,325	-
□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	286,400	336,269	336,269	-
□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49,600	14,056	14,056	-
□ 마을 안길 정비	20,000	-	-	-
○ 관리비 등	69,000	74,675	74,675	-
- 기본조사비	12,000	11,525	11,525	-
- 세부설계비	16,000	15,386	15,386	-
- 공사감리비	34,000	28,721	28,721	-
- 사업관리비	7,000	5,918	5,918	-
- 잡지출 및 기타	-	13,125	13,125	-
- 용지배수비	-	-	-	-
○ 역량강화사업	75,000	75,000	75,000	공 동 체 지원센터

고창군 공고 제2024-471호

#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고창군에서는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재정분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일  
고 창 군 수

## 1 개 요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 □ 참여유형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민주도형		읍면주도형	
	계	1,300	계	3,100
사업규모 (한 도 액)	균형발전분과	455	고창읍	400
	농촌활력분과	455	대산면	240
	문화관광분과	195	무장면·공음면·흥덕면	6,600 (각 220)
	복지환경분과	195	10개면	2,600 (면 당 200)
내 용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달성을 위한 전 분야		지역발전 도모하는 읍면단위 사업	

□ 추진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	제안건수	63	53	72	81
	반영건수	10	13	26	26
	예산액	231	730.1	1,081	1,110.8
	한도액	1,000	1,300	1,300	1,300
읍면주도형 참여예산사업	제안건수	279	281	252	259
	반영건수	279	281	252	259
	예산액	3,000	3,000	3,000	3,000
	한도액	3,000	3,000	3,000	3,000

**2** 추진체계

**I**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

□ 개요

- 기 간 : 연중 ※집중공모 : ~ 2024. 7. (7.31.이후 접수분 차년도 심의)
- 참여대상 : 고창군민, 군 소재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사업규모 : 13억원

분과위원회 (위원수)	한도액 (억원)	분과별 부서	분과 선임부서 (차기)
균형발전분과 (13)	4	신활력경제정책관, 안전총괄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신활력경제정책관)
농촌활력분과 (21)	4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물, 축산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분과 (13)	2.5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인재양성과, 재무과,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기획예산실)
복지환경분과 (13)	2.5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 선임부서 교체 : 2024. 7. 1.부터

○ 참여내용 :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분야

<부적격사업>

- 지방보조금 해당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국가사무(국방, 교육) 및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SOC)
- 기 시행중인 사업의 증액요구 및 경상적경비(인건비, 법정경비 등)
-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 마을안길포장, 마을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기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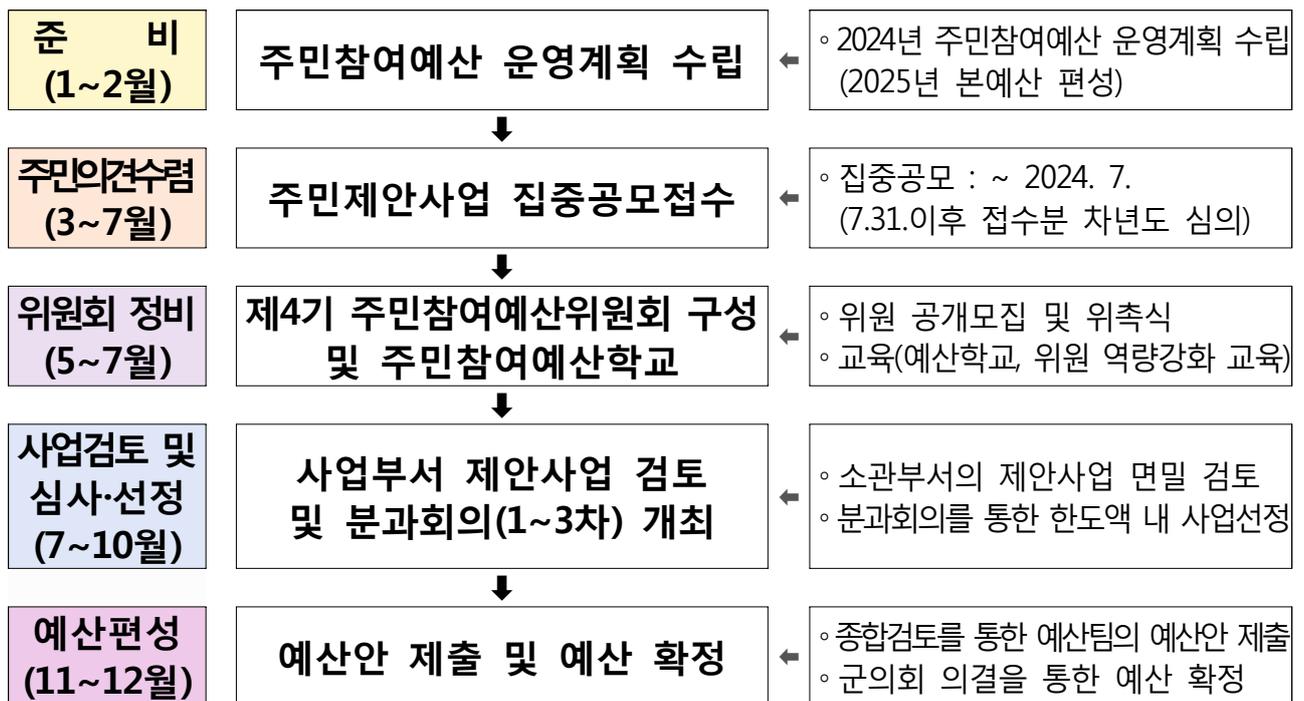
○ 참여방법

- 우편접수 : (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 서면접수 : 기획예산실(고창군청 2층), 읍면 행정복지센터
- 홈페이지 : 고창군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도 접수
- 이 메 일 : judydadido@korea.kr

○ 선정방법 : 소관 사업부서와 협의하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의결방법 : 성원(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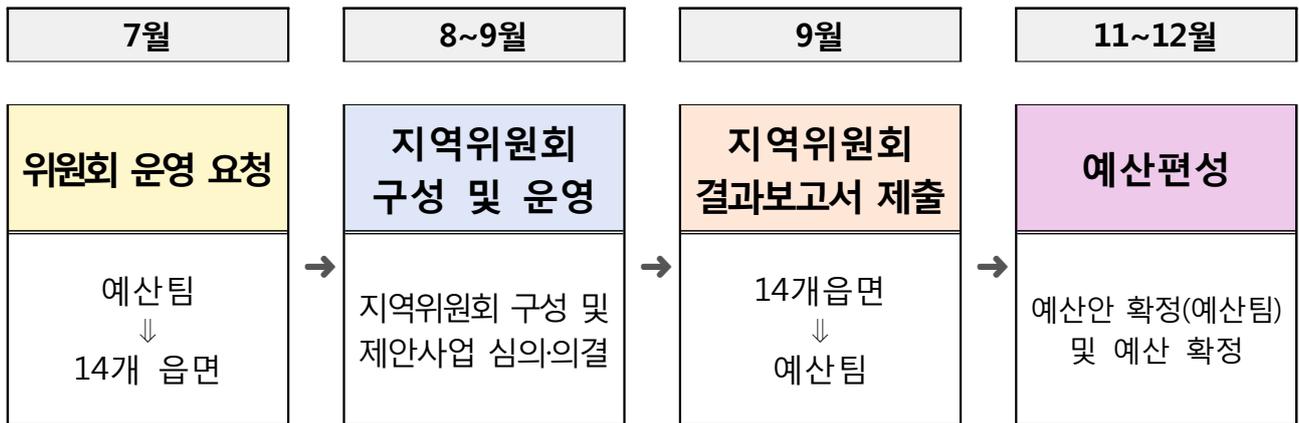


## II 읍면주도형 참여예산사업

### □ 개요

- 구 성 : 14개읍면 지역회의[위원장(읍면장) 및 민간위원]
- 위원회역할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및 제안사업 심의·의결
- 사업규모 : 31억원 [고창읍(4), 대산면(2.4), 무장면·공음면·흥덕면(각 2.2), 9개면(각 2)]
- 선정방법 : 지역회의에서 심의·의결(한도액 내 사업 편성 및 우선순위 결정)
- 의결방법 : 성원(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추진절차



## 3 추진세부사항

###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 및 선정

- 공모기간 : 2024. 5. (기간 중 15일) ※ 위촉식 : 2024. 7월중
- 인 원 : 60명 이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임 기 : 2024. 7. ~ 2026. 6. (2년)
- 신청자격
  - 공개모집에 지원한 고창군 주민
  - 예산·행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실관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최종선정 : 신청자격을 갖춘 이 중 선발을 거쳐 군수가 위촉

□ 주민참여예산 교육 개최

- 일 자 : 2024. 7.
- 교 육 명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참여예산학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및 제안서 작성 실습 등

□ 모니터링(현장, 서면) 실시

- 기 간
  - 서면모니터링 : 수시
  - 현장모니터링 : 2024년 상·하반기 (모니터링단·사업추진부서 참석)
- 대상사업 :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24년 편성) \*26개사업, 1,110.8백만원[붙임1]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상황 및 사후관리 점검 실시
  - 모니터링 결과·개선사항 등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게시

□ 설문조사 시행

- 기 간 : 2024. 7. ~ 8.
- 대 상 : 읍면 표본 설문조사자 등 고창 군민
- 내 용 : 2025년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예산 관련 의견 접수
- 방 법 : 온라인(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 주민참여예산 유공자 표창

- 표창시기 : 2024. 12. (하반기 정기표창)
- 훈 격 : 고창군수(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분야)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고창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기 간 : 연중
- 홍보방법
  - 온라인 : 고창군청 홈페이지, SNS, 인터넷 뉴스 등
  - 오프라인 : 고창군 소식지,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이장회의 등
- ※위원회(고창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예산학교 등 적극 홍보

# 4 행정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안내)</li> <li>군민 제안 적극 검토 및 반영</li> <li>분과회의 시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작성</li> <li>예산 편성 시 부서별 예산 요구</li> </ul>
분과위원회 선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과위원회 개최 지원 (회의자료, 회의록 등 사무처리 및 장소 지원)</li> <li>분과위원회 상정안건 제출</li> <li>유공자 표창대상자 선발 및 서류 제출</li> </ul>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 참석수당 지급 시 협조</li> <li>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자 표창</li> <li>군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코너, 팝업창, 설문조사 등) 운영 협조</li> </ul>
14개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수립,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 등)</li> <li>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비치·진달</li> <li>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li> </ul>

## ※ 참고사항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붙임 1

## 2024년 본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분과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b>총 계</b>		<b>26건</b>	<b>1,110.8</b>	
<b>소 계</b>		<b>10건</b>	<b>440</b>	
1	균형발전	로드킬 안내표지판 설치	5	건설도시과
2		도로 표지판 및 도로 이정표 유지 보수	47	건설도시과
3		성내면 호동마을 농업용수 확보	85	건설도시과
4		취수시설 관리를 위한 건널목 설치	40	건설도시과
5		회전로타리(회전차량우선) 안내판 설치	22	건설도시과
6		고창군민 교통안전 확보사업	200	건설도시과
7		차선규제봉(중앙분리봉) 일제정비	30	건설도시과
8		고창초 옆 도로변 주차금지 표식 설치	3	건설도시과
9		버스승강장 문 설치	4	건설도시과
10		그늘막 미니의자 설치사업	4	안전총괄과
<b>소 계</b>		<b>5건</b>	<b>455</b>	
11	농촌활력	흥덕문화복지관(하모니센터) 전광판 설치	191	농촌활력과
12		산불 위험도 알리미 설치사업	30	산림공원과
13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개선사업	32	산림공원과
14		임대농기계 배송개선사업	130	농업기술센터
15		임대용 반전집초기 구입	72	농업기술센터
<b>소 계</b>		<b>4건</b>	<b>64.2</b>	
16	문화관광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30	인재양성과
17		청소년 미래지도자 생성교육	10	인재양성과
18		찾아가는 영화관	5	문화예술과
19		역사와 문화를 품은 마을 벽화거리 조성사업	19.2	문화예술과
<b>소 계</b>		<b>7건</b>	<b>151.6</b>	
20	복지환경	군민복지회관 노후장비 교체	18	사회복지과
21		오감체험 고창나들이	42	사회복지과
22		장사시설 수목정비사업	30	사회복지과
23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20	환경위생과
24		쓰레기 분리수거장(클린하우스) 설치	10	환경위생과
25		심폐소생술 가상현실(VR) 체험장비 설치	26	보 건 소
26		주민안전을 위한 응급처치 안전교육	5.6	보 건 소

고창군 공고 제2024-472호

##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 고창군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 공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집중접수기간 : ~ 2024. 7. 31.

※ 접수기간은 연중(365일)이나, 7.31.이후 접수분 차년도 심의

2. 신청자격 : 고창군민, 고창군 소재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신청사업 :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분야

군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소규모 숙원사업 제외)

-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
-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다수 군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성 사업

부적합 사업

- 국고 매칭사업 및 법령·협약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 경비
- 특정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 이미 운영중인 기관·단체의 운영비적 경비
- 행사·축제성 사업 및 홍보성 사업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

가. 홈페이지 : [www.gochang.go.kr](http://www.gochang.go.kr) > 소통·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접수

나. 방 문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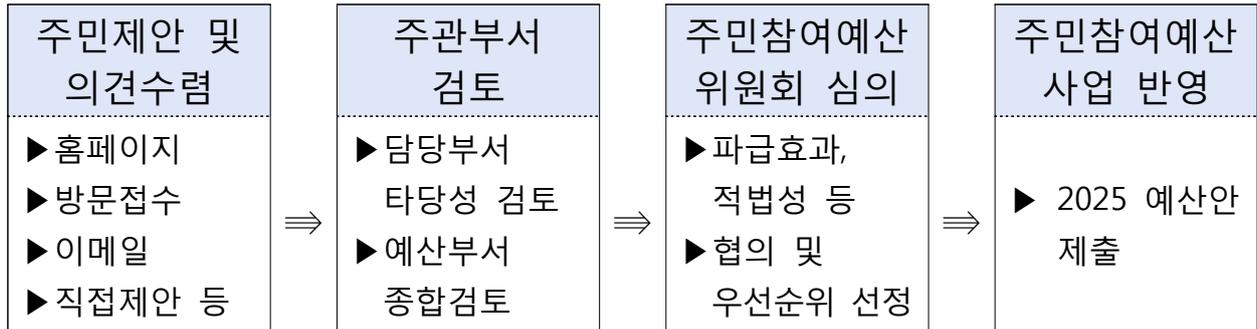
다. 우 편 : (우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라. 이 메 일 : [judydadido@korea.kr](mailto:judydadido@korea.kr)

5. 제출서류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붙임 서식)

※ 추가자료(도면, 사진 등) 첨부 가능

6. 제안사업 선정절차



7. 유의사항

가. 주민제안사업은 중복여부, 파급효과, 적법성, 실행가능성, 수혜자

범위, 수혜지역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부적합한 경우 예산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나. 국가사무 또는 타 기관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하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사항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063-560-2248)

붙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서식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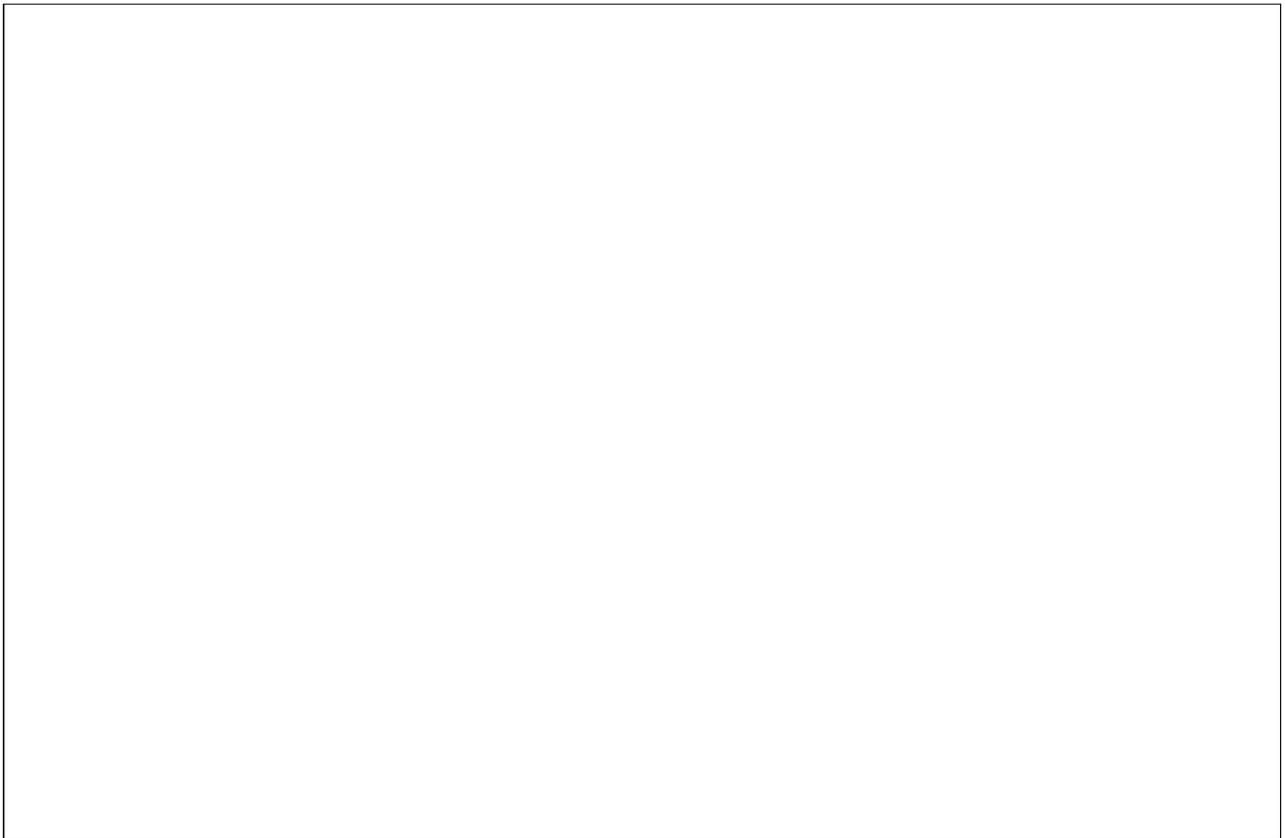


※ 개발사업의 경우 사진첨부 필수

위치도 (위성사진 등)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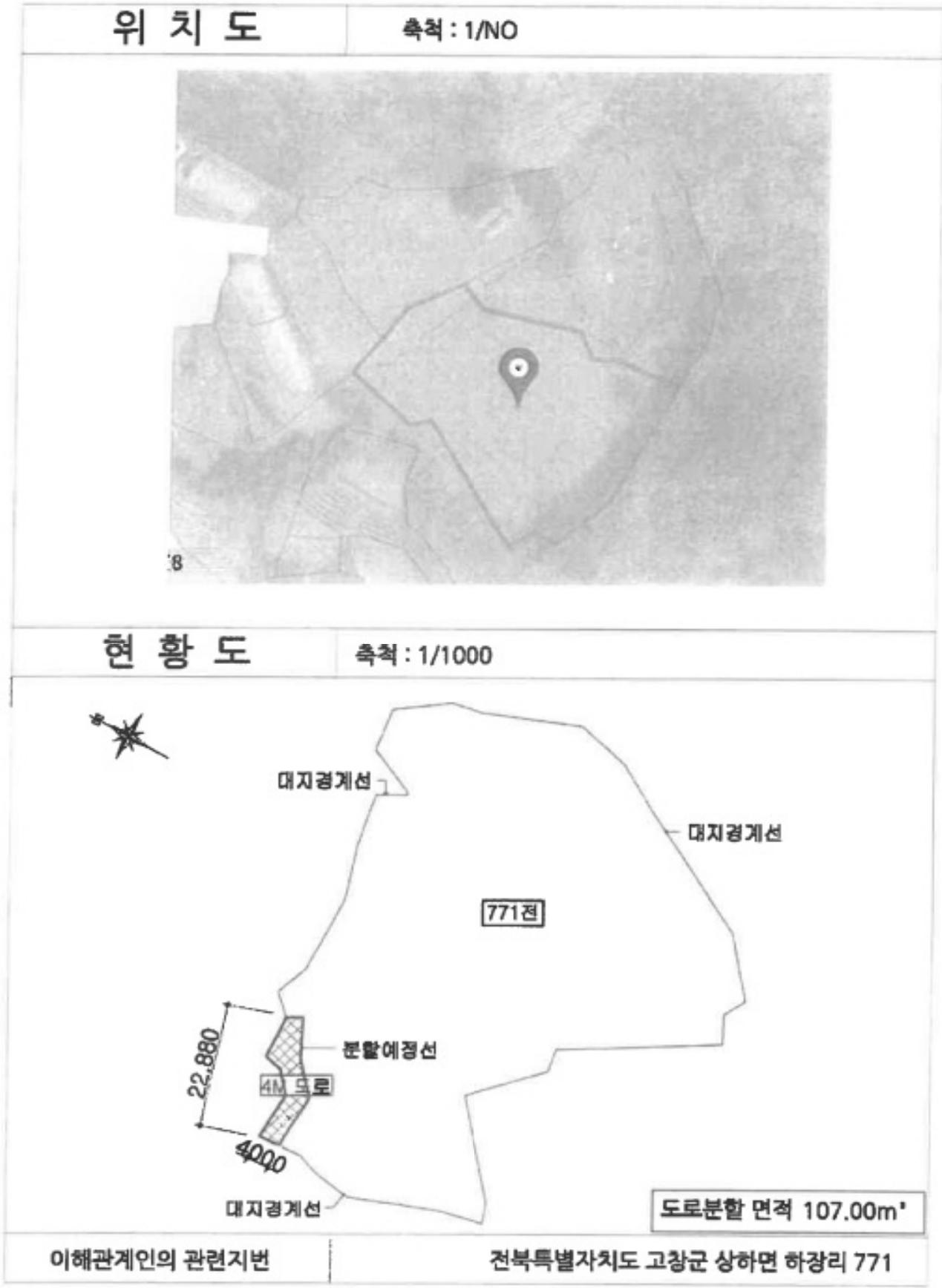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지번	771
건축주	김평희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2024-신축신고-27
도로길이	26.7m	도로너비	4m	도로면적	107㎡
<b>이해관계인 동의서</b>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771	107	2024.02.15	김성희		
작성자: 직급 건축사 성명 김성수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시공 성명 박재규 (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5호서식]

(2면중 제1면)

#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지번	12-4
건축주	김현정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28.0M꺾(㉠)	도로너비	6.0M(㉠)	도로면적	㉠ 0.2M2
<b>이해관계인 동의서</b>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sup>2</sup> )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12-4	0.2 (㉠)	2024.02.29	김현정		 (인)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 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sup>2</sup>)

(2면중 제2면)

